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8. 31 선고 2021가단1158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윤인하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7. 6.
판 결 선 고 2022. 8. 3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9.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9. 24. 접수 제0254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8. 14. C과 사이에, C의 D은행에 대한 4,100만 원 대출금채무 이행 보증을 위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C이 2020. 11. 1.부터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D은행은 2021. 3. 9.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1. 4. 30. D은행에 보험금 40,133,288원을 지급하였다.

2021. 7. 19.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0,722,640원이다.

나. C은 피고와 별지 기재 자동차를 1/2 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2020. 9. 24. 피고에게 자기의 지분을 이전하고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거래’).

[인정근거: 다통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사해행위취소권 발생 여부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와 C 사이에 구상금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거래로부터 약 1개월 남짓 지났을 무렵 C이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21. 3. 9. D은행이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미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2021. 4. 30.자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거래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취소권 발생 여부

1) 이 사건 거래 당시 C의 소극재산

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40,133,288원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C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C은 2020. 8. 24. E카드에 1,866만 원, F카드에 1,810만 원, G카드에 2,500만 원, H카드에 1,500만 원 합계 7,676만 원의 카드론 채무 부담하고 있었다(I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③ 따라서 이 사건 거래 당시 C에게는 116,893,288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

2) 이 사건 거래 당시 C의 적극재산

① C은 2001. 8. 28. 이후 부동산 거래내역이 없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는 점(국토교통부의 사실조회 회신)으로 미루어 이 사건 거래 당시 소유하는 부동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자동차 1/2 지분: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자동차 최초 등록일(2020. 8. 21.)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최초 등록 당시의 가액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모델이면서 2020년 5월식, 주행거리 1,474km인 자동차의 2021. 7. 26. 기준 시세가 9,490만원인 점, 2020. 8. 14. 이 사건 자동차 중 피고 지분(1/2)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이 5,520만 원이었던 점(을 제1호증),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구입시 대금이 9,567만 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답변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자동차 1/2 지분의 가액은 최소한 4,500만 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③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20. 9. 15. 광주시 J건물 K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계약금 750만 원 계약 시 지급, 잔금 1억 4,250만 원은 2020. 10. 9. 지급)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 750만 원의 영수증을 받은 사실, 2020. 10. 8. 임대인에게 5,000만 원과 39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C이 2020. 10. 8. D은행에서 신규로 8,860만 원을 대출받은 점(I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으로 미루어 C은 전세보증금 중 나머지 8,860만 원을 위 대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8,860만 원 상당의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이 동시에 발생한 셈인데, 8,860만 원의 대출금채무는 앞서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만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C의 전체 채권, 채무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중 8,860만 원은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급여: 을 제11호증의 1 내지 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9. 10. 1.부터 주식회사 L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2020. 1.부터 2020. 9. 25.까지 매월 247만 원 남짓한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에 소득금액이 8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이 앞서 본 D은행 대출금과 카드론 이자로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 매월 생활비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 등을 고려하면 급여 누적액이 그대로 C의 적극재산을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예금채권: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9. 24. 기준 C의 D은행 예금 잔고가 4,646,74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⑥ 따라서 이 사건 거래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자동차 1/2 지분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1,400,000원, 예금채권이고 그 가액 합계는 111,046,740원 정도이다.

3) 상당한 대가를 받고 매각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처음 이 사건 자동차를 C와 함께 구입할 당시 C이 부담한 금액보다 1,520만 원을 더 지급한 상태였는데, C 지분을 이전받으면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10. 15. 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4,000만 원을 넘는 돈을 주고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2,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 지분의 정당한 가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와 피고가 2020. 9. 2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대금 2,000만 원으로 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사실, C이 피고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2020. 9. 24.자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 2020. 10. 15. 피고 계좌에서 C 계좌로 500만 원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00만 원 영수증 외에 금융거래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피고도 2020. 10. 15. 500만 원은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피고가 C에게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도 별다른 설명이 없다.

나) 피고는, 현금으로 지급한 2,000만 원은 지인들에게서 빌린 900만 원과 피고가 운영하는 가게 수입 약 1,100만 원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M에게서 500만 원을 빌려 2021.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20. 9. 18.자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제6호증), 피고가 'N에게서 400만 원 빌려 가능한 빨리 변제하고 상황이 어려울 경우 2021. 12. 31.까지는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제7호증), 2021. 6. 28. 피고 계좌에서 500만 원이 N 계좌로 출금된 사실(을 제2호증)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지 않은 금액을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금융거래내역 없이 차용증만으로 차용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한편, 을 제8호증에 의하면 2020. 9. 1.부터 2020. 9. 22.까지 현금 매출이 11,773,2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위 문서의 출처와 근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한 달 가량의 현금

수입 누적액을 그대로 C에게 자동차 지분 이전대가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는, C 지분을 이전받는 대가를 2,000만 원으로 정하게 된 이유는 당초 이 사건 자동차를 C과 구입할 당시 피고가 C보다 1,520만 원을 더 부담한 점을 감안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피고가 대출받은 금액이 C보다 1,520만 원 더 많다고 하여 원래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1,520만 원을 더 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고의 주장대로 C이 부담한 4,000만 원과 피고가 대출받은 금액은 5,520만 원 합계가 그대로 이 사건 자동차 대금이었다고 할 경우 피고와 C이 부담할 금액은 각 4,760만 원이 되고, 피고는 원래 부담할 금액보다 760만 원을 더 낸 결과가 된다). 따라서 C 지분 이전 대가에서 1,520만 원을 제외하여야 함을 전제로 산정된 2,000만 원이 정당한 지분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사해행위 해당 여부

C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채무 합계액과 비슷한 수준의 책임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 이 사건 자동차 1/2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남은 재산(전세보증금반환채권, 예금채권)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피고에게서 상당한 대가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로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더욱 심화되었다고 인정된다.

C이 이 사건 거래 후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때부터 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점, 당시 C의 채무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이 사건 자동차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채무자와의 거래가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위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피고는, C에게 D은행 대출금채무가 있는지 알지 못했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C의 사해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고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지분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C이 형편도 어렵고 돈이 필요하다면서 그의 지분을 매도하려 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자동차 지분을 매도하는 것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사정, C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진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자동차 1/2 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피고가 몰랐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거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별지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
2. 제원관리번호 : 001-2-00066-0007-1319
3. 차 명 : BMW X5 xDrive30d M Sport Package
4. 차 종 : 승용대형
5. 차 대 번 호 :
6. 원 동 기 형 식 : B57D30A
7. 용 도 : 자가용
8. 모 델 연 도 : 2020
9. 최 종 소 유 자 :
10. 사 용 본 거 지 : 경기도 안양시

